



목 차

제1편 민법총칙

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	3
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: [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<문제> 1.]	3
사 례 2 미성년자	4
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2.]	4
사 례 3 법 인	5
3-1. 이사의 대표권제한 : [법전협 20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1.]	5
3-2. 중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: [법전협 12년 제2차모의. 제1문 문 3.]	6
3-3.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: [법전협 12년 제2차모의. 제1문 문 4.]	7
3-4.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: [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.]	8
3-5. 총유물의 관리·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: [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.]	9
3-6. 총유물의 관리·처분행위 : [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.]	10
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	11
4-1. 부동산 이중매매 : [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]	11
4-2.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: [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]	12
4-3. 부동산 이중매매 : [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<문제> 1.의 가.]	13
4-4.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: [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<문제> 1.의 나.]	14
4-5.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. 제1문의 6. 문제 1.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.]	15
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	16
5-1.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: [법전협 16년 제2차모의. 제2-1문. 문 1.]	16
5-2.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: [법전협 23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2.]	17
5-3.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: [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.]	18
5-4.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. 문1]	19
5-5.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: [법전협 16년 제1차모의. [제2문의 2] 문 2.]	20

사 례 6 대 리	21
6-1.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: [법전협 13년 제2차모의, 제2-1문 문 1.]	21
6-2.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: [법전협 13년 제2차모의, 제2-1문 문 2.]	22
사 례 7 표현대리	23
7-1.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: [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< 문제 > 1.]	23
7-2.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 문 1.]	24
사 례 8 무권대리	25
8-1.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. 문 1]	25
8-2.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: [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<문제> 1.의 다.]	26
8-3.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: [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<문제> 1.]	27
8-4.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: [법전협 20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1.]	28
사 례 9 무 효	29
유동적 무효의 법리 : [법전협 21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]	29
사 례 10 소멸시효	30
10-1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: [법전협 12년 제3차모의, 제2문 문 3.]	30
10-2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: [변시 22년 제11회, 제2문의 1. 문제 2.]	31
10-3.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1문의 1. 문제]	32
10-4.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, 제2문. 문제 2.]	33
10-5.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: [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.]	34
10-6.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: [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.]	34
10-7.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: [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<문제> 2.]	35
10-8.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: [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<문제> 2.]	36
10-9.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.]	37
10-10.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3. 문제 1.]	38
10-11.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, 제1문의 5. 문제 1.]	39
10-12.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, 제1문의 5. 문제 2.]	40

10-13.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: [법전협 18년 제1차 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41
10-14.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: [법전협 18년 제2차 모의, 제2문의 2. 문제 4.]	42
10-15.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: [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<문제> 3.]	43
10-16. 소멸시효이익 포기과 그 효력(상대효) : [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<문제> 4.]	44
10-17.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: [법전협 16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1. 문 4.]	45
10-18.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1차모의, 제1문의 5. 문제 3.]	46
10-19.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1차모의, 제1문의 5. 문제 4.]	47
10-20.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: [법전협 16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1. 문 2.]	48
10-21.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: [변시 20년 제9회, 제2문의 2. 문제 1.]	49

제2편 채권총론

사 례 1 이행보조자	50
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2문의 3. 문제 2.]	50
사 례 2 채권의 목적	51
2-1. 종류채권의 특징 : [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.]	51
2-2. 이행보조자의 고의·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: [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.]	52
2-3.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: [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.]	53
2-4.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자의 법적 취급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54
사 례 3 변 제	55
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2 문 4.]	55
사 례 4 변제충당	56
변제충당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56
사 례 5 변제자대위	57
5-1. 변제자대위 : [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]	57
5-2.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: [법전협 20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4. 문제 2.]	58
5-3.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]	59

5-4.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60
5-5.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: [법전협 15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]	61
5-6.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: [법전협 16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1. 문 1.]	62
5-7.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: [법전협 18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63
5-8.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: [법전협 18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2.]	64
5-9.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: [법전협 18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3.]	65
5-10.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: [법전협 18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1. 문제 5.]	66
사 례 6 상 계	67
6-1. 상계항변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, 문 2]	67
6-2.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4. 문제]	68
6-3.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·검색의 항변권 : [법전협 18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.]	69
6-4.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: [법전협 12년 제3차모의, 제2문 문 5.]	70
6-5.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: [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<문제> 2.]	71
6-6.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(부정)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72
6-7.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: [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]	73
6-8.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: [변시 20년 제9회, 제1문의 1. 문제 3.]	74
6-9. 비교 :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: [출제 예상 문제]	75
6-10. 상계충당 : [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.]	76
사 례 7 대상청구권	77
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: [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.]	77
사 례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	78
8-1.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: [변시 20년 제9회, 제1문의 2. 문제 1.]	78
8-2. 손해배상의 범위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3 문 2. (2)]	79
8-3.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3.]	80
8-4. 과실상계 : [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]	81
사 례 9 채권자대위권	82

9-1.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: [법전협 11년 제1차모의. 제1문의 4.]	82
9-2.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2.]	83
9-3.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: [변시 20년 제9회. 제2문의 2. 문제 2.]	84
사 례 10 채권자취소권	85
10-1.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: [법전협 21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3. 문제 2.]	85
10-2.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: [법전협 12년 제2차모의. 제2문 문 2.]	86
10-3.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12년 제2차모의. 제2문 문 3.]	87
10-4. 사해행위인지 여부 1 : [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<문제> 1.]	88
10-5. 사해행위인지 여부 2 : [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<문제> 2.]	89
10-6.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: [법전협 18년 제1차모의. 제1문의 3. 문제 3.]	90
10-7.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5. 문제 1.]	91
10-8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5. 문제 2.]	92
10-9.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4. 문제 1.]	93
10-10.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4. 문제 2.]	94
10-11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: [법전협 18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1.]	95
10-12.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: [법전협 18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1. 문제 4.]	96
10-13.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. 제2문. 문제 5.]	97
10-14.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. 제2문. 문제 6.]	98
10-15.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,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(부정)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4. 문제 3.]	99
10-16.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,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(유효)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4. 문제 4.]	100
10-17.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: [변시 21년 제10회. 제2문의 2. 문제 1.]	101
10-18.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	

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(부정)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2문의 2, 문제 2.]	102
10-19.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: [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<문제> 2.]	103
10-20.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1 : [법전협 13년 제1차모의, 제2문 문 1.]	104
10-21.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2 : [법전협 13년 제1차모의, 제2문 문 1.]	105
10-22.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3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3, 문제 1]	106
10-23.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: [변시 22년 제1회, 제1문의 5, 문제 3.]	107

사 례 11 채권양도	108
11-1.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: [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<문제> 2.]	108
11-2.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: [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]	109
11-3.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: [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]	110
11-4.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: [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<문제> 1.]	111
11-5.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,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: [법전협 15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 문 2.]	112
11-6. 채무자의 이익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: [법전협 15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 문 3.]	113
11-7.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: [법전협 15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[문제 1] <문 1>]	114
11-8. 채무자의 이익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, 문제 2.]	115
11-9. 채무자의 이익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, 제2문, 문제 3.]	116
11-10.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: [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.]	117
11-11.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: [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.]	118
11-12.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: [법전협 18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, 문제 5.]	119
11-13.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: [법전협 13년 제3차모의, 제2문 문 4.]	120
11-14. 채권의 이중양도, 보증채무 : [법전협 16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1, 문 3.]	121
11-15.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: [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.]	122
11-16.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, 제2문, 문제 4.]	123

사 례 12 면책적 채무인수	124
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: [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<문제> 2.]	124

사 례 13 이행인수	125
13-1.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, 문 4]	125
13-2.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: [법전협 20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, 문제 2.]	126

13-3.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. 제1문의 6. 문제 1.]	127
사 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	128
14-1.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2.]	128
14-2. 병존적 채무인수,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3.]	129

제3편 채권각론

사 례 1 계약의 성립	130
1-1.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: [변시 21년 제10회. 제2문의 3. 문제 1.]	130
1-2. 청약의 확정성 및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: [법전협 23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1.]	131
사 례 2 위험부담	132
2-1.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1 문 2.]	132
2-2. 이행인수, 채권자위험부담주의,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채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: [법전협 15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1 문 1.]	133
2-3.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1 문 4.]	134
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	135
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. 문 3]	135
사 례 4 해 제	136
4-1. 해제의 요건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. 제1문의 3 문 1.]	136
4-2.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: [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]	137
4-3.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: [법전협 12년 제2차모의. 제2문 문 4.]	138
4-4.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: [법전협 18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1.]	139
4-5.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: [법전협 18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2.]	140
4-6.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18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3.]	141
4-7.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1.]	142
4-8.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. 문 1]	143
4-9.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: [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<문제> 1.의 라.]	144

사 례 5 증 여	145
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: [변시 24년 제13회, 제2문의 1. 문제 2.]	145
사 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	146
6-1.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: [변시 17년 제6회 <제1문의 1 - 문제> 1.]	146
6-2.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: [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<문제> 2.]	147
6-3.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: [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]	148
6-4.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1.]	149
사 례 7 담보책임	150
7-1.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 문 1.]	150
7-2.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1문의 3 문 2. (1)]	151
7-3.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,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1.]	152
7-4.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: [법전협 20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153
사 례 8 임대차	154
8-1.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1.]	154
8-2.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,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: [법전협 15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 문 2]	155
8-3.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: [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]	156
8-4.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: [법전협 14년 제1차모의, 제1문 문 8.]	157
8-5.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: [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. 문 2.]	158
8-6.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2문의 1. 문제 1.]	159
8-7.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: [법전협 17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.]	160
8-8.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, 문 4]	161
8-9.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, 제1문의 2. 문제 1.]	162
8-10.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: [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]	163
8-11.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2문의 1. 문제 2.]	164

사 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	165
9-1.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 문 3.]	165
9-2.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 문 4.]	166
9-3.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: [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.]	167
9-4.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 문 3.]	168
9-5.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: [변시 17년 제6회 <제2문의 1 - 문제> 2.]	169
9-6.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: [법전협 23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7. 문제 2.]	170
9-7.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. 문 1.]	171
9-8.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. 문 2.]	172
사 례 10 도 급	173
10-1. 도급의 법률관계 : [법전협 21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3. 문제 1.]	173
10-2. 수급인의 담보책임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, 제1문의1. 문제 2.]	174
10-3.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: [법전협 21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175
사 례 11 조 합	176
11-1.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2. 문제 1.]	176
11-2.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: [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]	177
11-3.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: [법전협 21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3. 문제 2.]	178
11-4.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: [법전협 13년 제3차모의, 제2문 문 1.]	179
11-5.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: [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]	180
사 례 12 화 해	181
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2. 문제1.]	181
사 례 13 부당이득	182
13-1.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2. 문제2.]	182
13-2.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: [법전협 16년 제1차모의, [제2문의 2] 문 1.]	183
13-3.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184
13-4.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: [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]	185
13-5.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186

13-6.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]	187
13-7.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: [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]	188
13-8.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: [변시 22년 제11회, 제2문의 1. 문제 1.]	189
13-9.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. 문 1.]	190
13-10. 무권대리와 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]	191
사 례 14 사용자책임	192
14-1. 사용자책임 1 : [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.]	192
14-2. 사용자책임 2 : [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]	193
사 례 15 공작물책임	194
15-1. 공작물책임 : [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]	194
15-2.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2.]	195
15-3.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3.]	196
사 례 16 공동불법행위	197
16-1.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: [변시 17년 제6회 <제2문의 3 - 문제> 1.]	197
16-2.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: [변시 17년 제6회 <제2문의 3 - 문제> 2.]	198
16-3.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: [법전협 16년 제1차모의, [문제 1] 문 2.]	199
16-4.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: [법전협 16년 제1차모의, [문제 1] 문 3.]	200

제4편 물건법

사 례 1 물건법 서론	201
1-1.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: [변시 24년 제13회, 제1문의 6.]	201
1-2.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: [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]	202
1-3.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: [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]	203
사 례 2 등 기	204
2-1.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1.]	204
2-2. 말소회복 등기의 상대방 : [법전협 23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.]	205
2-3. 등기의 추정력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206

2-4.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]	207
2-5. 중간생략등기 : [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<문제> 1.]	208
2-6.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: [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<문제> 2.]	209
2-7.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: [변시 17년 제6회 <제1문의 1 - 문제> 2.]	210
2-8.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효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1문의 5. 문제 2.]	211
사 례 3 선의취득	212
3-1. 선의취득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1. 문제 1.]	212
3-2.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: [변시 20년 제9회, 제1문의 2. 문제 2.]	213
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	214
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214
사 례 5 소유권 총설	215
5-1.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: [법전협 23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215
5-2. 특정인의 공로통행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: [법전협 23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216
5-3. 주위토지통행권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1.]	217
5-4.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,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2.]	218
사 례 6 취득시효	219
6-1.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: [변시 17년 제6회 <제2문의 2 - 문제> 2.]	219
6-2.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14년 제2차모의, 제2문 문 1.]	220
6-3.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: [법전협 14년 제2차모의, 제2문 문 2.]	221
6-4.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: [법전협 13년 제1차모의, 제1-2문 문 1]	222
6-5.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: [법전협 13년 제1차모의, 제1-2문 문 3.]	223
6-6.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.]	224
6-7.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부정) : [법전협 20년 제1차모의, 제2문, 문제 2.]	225
6-8.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: [법전협 20년 제1차모의, 제2문, 문제 3.]	226
6-9.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: [법전협 17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227
6-10.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(= 원시취득) : [법전협 21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1.]	228
6-11.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: [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.]	229

6-12.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: [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.]	230
6-13.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: [변시 24년 제13회, 제2문의 1. 문제 1.]	231
사 례 7 부 합	232
7-1.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: [법전협 17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2.]	232
7-2.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1.]	233
사 례 8 공동소유	234
8-1.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: [변시 17년 제6회 <제2문의 2 - 문제> 1.]	234
8-2.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: [법전협 18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235
8-3.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: [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<문제> 2.]	236
8-4.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 문 1.]	237
8-5. 공유물의 관리행위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 문 2.]	238
8-6.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 문 3.]	239
8-7.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 문 4.]	240
8-8.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: [법전협 20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 2.]	241
사 례 9 명의신탁	242
9-1.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: [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<문제 1>]	242
9-2.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. 문 3]	243
9-3.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,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: [법전협 16년 제1차모의, [제2문의 3] 문 3.]	244
9-4.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 문 5.]	245
9-5.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1. 문제1.]	246
9-6.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: [법전협 20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1.]	247
9-7.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: [법전협 20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2.]	248
9-8.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: [법전협 22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2.]	249
9-9.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: [법전협 18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 2.]	250
9-10.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: [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<문제> 1.]	251
9-11.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: [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<문제> 2]	252

9-12.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: [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<문제> 3.]	253
9-13.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3.]	254
사 례 10 지상권	255
10-1. 담보지상권의 경우,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. 제1문의 5. 문제 1.]	255
10-2.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. 제1문의 5. 문제 2.]	256
10-3.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. 제1문의 5. 문제 3.]	257
10-4. 자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1 문 2.]	258
사 례 11 분묘기지권	259
11-1. 분묘기지권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4. 문제 1.]	259
11-2.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4. 문제 2.]	260
사 례 12 법정지상권	261
12-1. 법정지상권자의 자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. 제2문의 1. 문제 1.]	261
12-2.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1.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.]	262
12-3.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: [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<문제 2>의 문 2.]	263
12-4.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: [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<문제> 1.]	264
12-5.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: [법전협 15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1 문 1.]	265
12-6.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: [법전협 14년 제2차모의. 제2문 문 7.]	266
12-7.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: [법전협 16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2. 문 1.]	267
12-8.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: [법전협 16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2. 문 2.]	268
12-9.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: [변시 17년 제6회 <제1문 의 3 - 문제> 1.]	269
사 례 13 전세권	270
13-1.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: [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]	270
13-2.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: [법전협 14년 제2차모의. 제2문 문 5.]	271
13-3.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: [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]	272
13-4.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: [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<문제> 1.]	273
13-5.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 : [법전협 16년 제2차모의. 제2-1문. 문 2.]	274

13-6.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 : [법전협 16년 제2차모의, 제2-1문, 문 3.]	275
사 례 14 유치권	276
14-1.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(긍정)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. 문제1.]	276
14-2.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(긍정)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. 문제2.]	277
14-3. 선행(先行)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(부정)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. 문제3.]	278
14-4.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(부정) : [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]	279
14-5.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: [법전협 18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. 문 제 3.]	280
14-6.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: [법전협 14년 제1차모의, 제1문 문 7.]	281
14-7.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 부 : [법전협 16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. 문 2.]	282
14-8.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3. 문제]	283
사 례 15 질 권	284
15-1.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: [법전협 23년 제2차모의, 제1문의 7. 문제1.]	284
15-2.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21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4]	285
사 례 16 저당권	286
16-1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. 문제 2.]	286
16-2.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. 문 제 1.]	287
16-3.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: [법전협 17년 제1차모의, 제1문의 1. 문제 2.]	288
16-4.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: [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. 문 2.]	289
16-5.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 는 전략 : [변시 21년 제10회, 제1문의 5. 문제 1.]	290
16-6.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: [변시 20년 제9회, 제2문의 1. 문제 2.]	291
16-7.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: [법전협 17년 제3차모의, 제2문, 문제 1.]	292
16-8.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: [변시 17년 제6회 <제 1문의 4 - 문제> 1.]	293
16-9.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: [변시 17년 제6회 <제1문	

의 4 - 문제 2.]	294
16-10.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: [변시 20년 제9회, 제2문의 1, 문제 1.]	295
16-11.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1, 문제 3.]	296
사 례 17 공동저당	297
17-1. 누적적 근저당권 : [법전협 21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2, 문제]	297
17-2.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1 : [법전협 13년 제2차모의, 제2-2문 문 1.]	298
17-3.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2 : [법전협 13년 제2차모의, 제2-2문 문 2.]	299
17-4.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, 문 2]	300
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	301
18-1. 양도담보의 법리 : [법전협 21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2, 문제 2]	301
18-2.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: [법전협 17년 제2차모의, 제2문의 3]	302
18-3.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: [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]	303
18-4.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: [법전협 20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1, 문제 3.]	304

제5편 가족법

사 례 1 혼 인	305
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인지 여부 : [변시 24년 제13회, 제2문의 1, 문제 3.]	305
사 례 2 이해상반행위	306
2-1. 이해상반행위 : [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]	306
2-2. 이해상반행위와 친권(대리권)남용 : [법전협 20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, 문제 1.]	307
2-3.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: [법전협 20년 제1차모의, 제2문의 2, 문제 2.]	308
사 례 3 부양과 양육	309
3-1.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, 문 1]	309
3-2.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, 문 2]	310
3-3.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: [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, 문 3]	311
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	312
4-1. 상속회복청구권 : [법전협 14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3 문 1.]	312
4-2.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: [법전협 21년 제3차모의, 제2문의 5, 문제]	313

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	314
5-1.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: [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, 2-2.]	314
5-2.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: [법전협 23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1. 문제 2.]	315
5-3.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: [변시 22년 제11회. 제2문의 3. 문제 1.]	316
5-4.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4 : [법전협 18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2. 문제 3.]	317
5-5.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. 제1문의 6. 문제 2.]	318
5-6. 상속재산의 분할협이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: [법전협 19년 제2차모의. 제1문의 6. 문제 3.]	319
5-7.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: [변시 20년 제9회. 제2문의 3. 문제 1.]	320
5-8.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: [변시 20년 제9회. 제2문의 3. 문제 2.]	321
5-9.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: [변시 20년 제9회. 제2문의 3. 문제 3.]	322
5-10.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소급효의 제한 : [법전협 23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3. 문제 3.]	323
5-11.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: [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]	324
5-12.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: [법전협 22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3. 문제 3.]	325
5-13.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: [변시 22년 제11회. 제2문의 3. 문제 2.]	326
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	327
6-1.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: [법전협 20년 제2차모의. 제2문의 3.]	327
6-2.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: [법전협 16년 제2차모의. 제2-2문. 문 1.]	328
6-3.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: [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, 2-1.]	329
6-4.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: [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. 문 3.]	330
6-5.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: [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]	331
사 례 7 유 언	332
7-1.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: [법전협 19년 제1차모의. 제2문의 4.]	332
7-2.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: [법전협 22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4. 문제 1.]	333
사 례 8 유류분	334
유류분반환청구권 : [법전협 15년 제3차모의. 제2문의 3]	334